

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413호 2019. 11. 18.(월)

공 고

○ 목포항화물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----- 2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목포시 공고 제2019-1561호

입 법 예 고

『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』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1월 18일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개정으로 자동차 환적화물 규정에 대한 효력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개정조례에 맞춰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
- ‘19. 9. 19.(목) 개최된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제3조 지원기준의 모호성 정비

2. 주요내용

①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- ‘순증화물’을 ‘직전년도 2년간 평균 화물처리 실적대비 순수 증가한 컨테이너 화물’로 정의

② 지원기준(안 제3조)

- 제3항의 손실보전금의 구체적인 상한선 규정

구 분	기 준	변 경	비 고
① 선사의 하역비 및 해상운임 일부 지원	· 컨테이너 화물 1TEU당 30,000원 이내 지원하되, - 순증화물 100% - 나머지 화물 50% · 자동차 환적화물 - 1대당 1,500원 이내	·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, - 컨테이너 순증화물 100% - 컨테이너 기존화물 50% · 선사당 연간 지원액은	·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인센티브 지급

	· 선사당 연간 지원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	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	
② 화주 또는 물류기업의 수출입비용 일부 지원	· 컨테이너 화물 1TEU당 30,000원 이내 지원하되, - 순증화물 100% - 나머지 화물 50% · 화주 또는 물류기업 당 연간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	·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, - 컨테이너 순증화물 100% - 컨테이너 기존화물 50% · 화주 또는 물류기업 당 연간 지원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	·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실효성 제고
③ 선사의 손실액 일부 보전금 지원	· 「기업회계 기준」에 의하여 산출된 손실액의 49퍼센트 이하	· 「기업회계 기준」에 의하여 산출된 손실액의 49퍼센트 이하로 하되, ·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당 연간 3억원 이하로 지급	· 선사당 연간 지원 상한액 지정

③ 지원금 지급시기 변경(안 제4조)

- 지원금 지급시기를 연간지급에서 필요에 따라 반기별 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

④ 심의위원회 구성 (안 제6조)

-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

⑤ 부칙정비(시행일 및 유효기간)

-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한 규정 효력 기간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조례를 따르도록 변경

3. 개정규칙안 : 별첨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5. 관계법령

- 목포항 화물유치 지원 조례

6. 예산 수반사항 : 300백만원 (도비 150, 시비 150)

7.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자체개선안 동의

○ 여성가족과-43166(2019.11.6.) : 2019A전남목포055

8. 규제심사(심의)대상 여부 검토 : 해당없음

9. 입법예고 : 2019. 11. 18. ~ 12. 9.(21일간)

10. 사전협의(승인)사항 : 해당없음

11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(해양항만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보내실 곳:[우530-701,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 목포시청(해양항만과)]

12. 기타사항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해양항만과(☎ 061-270-8857, FAX 270-364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규칙 제 호

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컨테이너 화물 및 자동차 환적 화물”을 “컨테이너 화물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컨테이너 1티이유(TEU) 당 30,000원 이내 자동차 환적화물 1대당 1,500원 이내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”를 “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되”로 하고,

같은 조 제2항 중 “컨테이너 1티이유(TEU) 당 30,000원 이내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, 순증화물”을 “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, 컨테이너 순증화물”로 하며,

같은 조 제3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지원액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개 선사당 3억원 이내로 한다.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제3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연간으로 한다.”를 “제3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연간으로 하고, 필요한 경우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어느 한쪽 성(性)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제3조 중 “2019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조례에 정한 기간에 따라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 (용어의 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----- ----- <u>컨테이너 화물 및 자동차 환적 화물을 말한다.</u>	제2조 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.</u>
제3조 (지원기준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① ----- ----- <u>컨테이너 1티이유(TEU)당 30,000원 이내, 자동차 환적 화물 1대당 1,500원 이내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제3조 (지원기준) ----- -----. ① ----- ----- <u>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----- ----- <u>컨테이너 1티이유 (TEU)당 30,000원 이내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되, 순증화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	② ----- ----- <u>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, 컨테이너 순증화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③

 ----- 한다.

④ (생 략)

제4조 (지원금의 지급시기) -----

----- 한
다.

제6조 (심의위원회의 구성)

①

 ----- 한다.

②, ③, ④ (생 략)

부칙 <2017 · 4 · 10 조3094>

제3조(유효 기 간) -----

 ----- 2019년 12월 31일
까지 -----.

③

 ----- 하며, 지원액은 확보

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개 선사
당 3억원 이내로 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4조 (지원금의 지급시기) -----

----- 하
고, 필요한 경우 반기별로 지급할
수 있다.

제6조 (심의위원회의 구성)

①

 ----- 하며, 어느 한
쪽 성(性)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
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
②, ③, ④ (현행과 같음)

부칙 <2017 · 4 · 10 조3094>

제3조(유효 기 간) -----

 ----- 조례에 정한 기간에
따라 -----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